

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시기 조정['25.1.1. ~]
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[별표 6의2] 비고 제2호 개정

※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

(기존) 해당 업무 수행 전에 안전교육 1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했음

(개정)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경우,

일부 교육시간(8시간)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

[신규]

구분	교육 대상	교육 이수 방법	
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	- 직접 취급자	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담당자	① (취급전) 16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② (취급전) 8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+ (취급전) 8시간 온라인교육(안전원) ③ (취급전) 8시간 온라인교육(안전원) + (취급전) 8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* ①, ②, ③ 중 선택
	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담당자	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담당자	① (취급전) 16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② (취급전) 8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+ (취급전) 8시간 온라인교육(안전원) ③ (취급전) 8시간 온라인교육(안전원) + (취급전) 8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④ (취급전) 8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+ (취급일부터 3개월 이내) 8시간 온라인교육(안전원) * ①, ②, ③, ④ 중 선택

[보수]

☞ 다만,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, 관리자,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아래 ①, ② 중 선택

① 16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

② 8시간 집합교육(교육기관) + 8시간 온라인 교육(안전원)

→ ②의 경우 각 교육은 반드시 동일 연도 내에 이수해야 하되, 각각 다른 날에 이수해야 함 (같은 날 수료 불가)

(안전원) 화학물질안전원

(교육기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, 한국화학안전협회, 한국환경기술인협회,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, 한국반도체산업협회, 한국환경보전원